고용주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연방 이민 단속관이 사업장에서 I-9 점검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권리

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IWPA, 이민 근로자 보호법)는 연방 이민 단속관이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I-9(고용 자격 확인서) 점검을 실시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는 워싱턴주 법률입니다. I-9 점검이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이민세관단속국) 소속 단속관을 포함한 연방 이민 단속관이 고용주가 I-9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우려 사항을 전달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IWPA@atg.wa.gov

(206) 254 - 4270

IWPA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연방 기관으로부터 I-9 양식 및 관련 근로자 기록에 대한 점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근로자(노동조합 또는 단체교섭 대표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에게 해당 점검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I W P A

2. 연방 기관으로부터 I-9 점검 결과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점검에서 근로자의 취업 허가 관련 양식에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해당 근로자가 취업 허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노동조합 또는 단체교섭 대표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하고, 해당 근로자 및 그 노동조합 또는 단체교섭 대표에게 면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고지 요건의 전체 내용은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법전) 49.97.050 및 49.97.06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9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본 고용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직접 전달 /☐기타) 방법으로 각 근로자에게 I-9 점검 사실을 통지하며, 모든 I-9 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다음 장소에 게시합니다.

_____

_____

I-9 점검에서 미비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고용주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각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직접 전달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가 고용주와 면담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게시문은 RCW 49.97에 따라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제공합니다.
버전 1(2026년 9월)

자주 묻는 질문

I-9 점검이란 무엇인가요?

I-9는 연방정부의 양식입니다. 고용주와 신규 근로자는 근로자의 신원과 미국 내 취업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I-9 양식 작성 지침에는 근로자가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I-9 양식 작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특정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의 I-9 양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고용주는 채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I-9 양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I-9 양식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개별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증명서 또는 취업 허가 증명서류 사본의 보관 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Verify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E-Verify의 기록 보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연방 이민 단속관은 Notice of Inspection(점검 통지서)을 발송하여 I-9 점검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고용주에게 각 근로자의 I-9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급여 관련 서류 등 그 밖의 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Notice of Inspection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I-9 양식과 그 밖에 요구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I-9 점검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I-9 점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고,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거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거나, 그 밖의 구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워싱턴주 법무장관)도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이민 근로자 보호법)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IWPA@atg.wa.gov로 이메일을 보내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이민 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저에게 보복할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예로는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고용주는 인사평가, 승진, 해고 또는 징계에서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법 또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연방법상 취업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분에 관하여 법률적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I-9 점검 절차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Washington Immigrant Solidarity Network(WAISN, 워싱턴 이민자 연대 네트워크) Deportation Defense Hotline(추방 대응 핫라인):** 1-844-724-3737. 운영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약 300개 언어로 통역을 제공합니다. Know Your Rights(권리 안내) 정보, 법률 지원 연계 및 관련 자료, 동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s://waisn.org/what-we-do/deportation-defense/hotline/
-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NWIRP,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는 워싱턴주 이민자에게 법률 서비스와 권익 옹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info@nwirp.org. NWIRP의 추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nwirp.org/get-help/
- **그 밖의 기관 및 지원 자료**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tg.wa.gov/iwpa

이 게시문은 RCW 49.97에 따라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제공합니다.
버전 1(2026년 9월)